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24 선고 2023재가단28 판결 [건물명도]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24 선고 2023재가단2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나1337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12 선고 2020재가단10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4. 14 선고 2019가단4223 판결

전문

원고(재심피고) B

피고(재심원고) A

변론종결 2024. 8. 27.

판결선고 2024. 9. 24.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4. 14. 선고 2019가단422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재심원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재심피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약 60㎡)을 인도하라.
-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이 유

1. 기초 사실

재심피고가 2019. 5. 22. 재심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법원 2019가단4223호), 위 사건에서 2020. 4. 14. 재심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 재심대상판결이 2020. 5. 5.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재심원고의 주장

재심피고는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날조된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송사기를 저질렀다.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하며, 재심피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해당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것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별지

1) 재심원고가 주장한 사항을 감안하여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